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안내문

교육 방법	구분		설명	교육 실시 증빙자료 (예시)	비고
간이 교육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체(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인 경우에만 실시 가능		교육자료(리플릿)를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 * 교육자료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c.kead.or.kr)>교육자료실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	교육자료 배포·게시한 증빙자료, (게시판사진, 전자우편 발송내역 등)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는 없으나, 교육 실시 자료 3년간 보관 필요
집합 교육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체	사업주 및 내부 직원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직접 교육 * 강의자료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c.kead.or.kr)>교육자료실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	교육일지 (사진 포함), 참석자 서명부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의무, 교육 실시 자료 3년간 보관 의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사내강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사내강사가 직접 교육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체가 실시 가능	전문강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전문강사 초빙 * 상시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지원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무료 교육 가능(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c.kead.or.kr)-무료교육지원에서 수행 기관 찾기 등 확인)		
	지정 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정한 집합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실시			
원격 교육	모든 사업체	공단 e러닝 시스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c.kead.or.kr) 내 "이러닝 교육"을 통해 수강 가능	교육일지, 개인별 교육이력 증빙자료 (컴퓨터 로그기록, 수료증 등)	
		사업주 자체 학습관리 시스템	자체 학습관리시스템(LMS)을 갖춘 경우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지정 교육기관이 제공한 자료나 전문(사내)강사가 제공한 교육자료 활용하여 직접 교육 * 공단 교육자료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포털(educ.kead.or.kr)>교육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지정 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정한 원격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실시		
체험 교육	모든 사업체	강사·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전문강사나 지정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장애 체험, 문화체험 등을 결합한 교육 실시 * 체험형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인식개선부(031-728-7312)로 문의	교육일지 (사진 포함), 참석자 서명부	

1. 법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5조의3

2. 사업주의 의무

가. 교육대상 및 내용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 내용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3호 제3조 제2항 해당 자는 교육 대상 제외	연 1회 1시간 이상	①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②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④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나. 교육 방법

- 1) 교육주체: 자체교육(사업주 또는 내부직원)*, 전문강사 초빙, 지정 교육기관 위탁
*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체는 사내 강사 양성과정 수료자가 실시 가능
- 2) 교육방법: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 3) 증빙자료: 교육일지, 교육사진, 참석자 명단(증빙자료는 3년간 보관의무가 있음)

단, 50인 미만 사업주는 교육 자료 배포·게시 사진 자료 등

다. 교육 결과 보고

- 1) 보고방법: 월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가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 상황 보고 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 이행 결과 보고서* 함께 제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
- 2) 제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http://www.esingo.or.kr>) 사이트, 각 지역 본부 및 지사(방문, 우편, 팩스)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

가. 교육 자료 보급

- 1) 대상 및 내용: 사업주 활용 가능한 교육 자료(표준교육교재, 원격교육용 콘텐츠, 간이교육자료)
- 2) 이용방법: 교육포털-교육자료실(edu.kead.or.kr)에서 별도 회원가입없이 다운로드 가능

나. 무료 강사 지원 사업

- 1) 대상: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사업장 단위로 연 1회 신청 및 지원 가능)
- 2) 내용: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에서 교육 강사를 무료로 파견하여 1시간 이상 교육 진행
- 3) 신청: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에 신청서* 제출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지사로 문의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무료 교육지원 → 강사지원사업 안내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다. 문화체험형 교육 지원 사업

- 1) 대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 2) 내용: 문화 체험형 교육 수행기관을 통해 인식개선 교육과 문화예술 체험(공연 등) 함께 실시
- 3)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식개선부로 문의

라. 무료 이러닝 교육

- 1) 대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
- 2) 교육 수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이러닝시스템(e-edu.kead.or.kr)

마. 기타(통합 인식개선 교육 콘텐츠)

- 1)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대상이 되는 기관(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2) 교육 수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이러닝시스템(e-edu.kead.or.kr),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able-edu.or.kr/elearning), 중앙교육연수원(neti.go.kr), 각 부처 나라배움터 등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식개선부

Tel) 031-728-7179 Fax) 050-3470-0809, Email) edupro@kead.or.kr